



제410회국회(정기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진선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4835호)

2023. 11.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김경호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진선미의원 등 11인

나. 발 의 일 : 2023. 9. 27.

다. 회 부 일 : 2023. 10. 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내국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금 및 잉여금의 분배금 등(이하 “수입배당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일정 기준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음.

다만, 내국법인이 유동화전문회사 등과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출자한 경우에는 해당 피출자법인은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을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출자법인에 대하여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유동화전문회사인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에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이익준비금 적립의무를 면제하고 있으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경우에는 「상법」 제458조에 따라 이익배당액의 일정 부분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함.

그러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하여 배당한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규정에 따라 배당하지 아니한 이익인 이익준비금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익금으로 산입되어 법인세가 과

세되고, 추후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해산 등에 따라 출자법인이 해당 이익준비금을 재원(財源)으로 하는 수입배당금액을 받는 경우에는 현행법의 익금불산입 배제 조항에 따라 출자법인에 대해서도 해당 금액이 익금으로 산입되어 법인세가 이중과세되고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함.

이에 출자법인이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이익준비금을 재원으로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대해서는 출자법인에 대한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받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제2항).

Ⅲ. 검토의견

1.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 합리화 (진선미의원안, 정부안)

현 행	정부안
☐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18조의2) ○ 익금불산입 대상 - 이익의 배당금 또는 잉여금의 분배금 - 배당금 또는 분배금으로 의제하는 금액 (의제배당소득) ○ 익금불산입 제외대상 - 배당기준일 전 3개월 이내 취득한 주식등의 수입배당금 - 지급배당 소득공제를 받은 유동화 전문회사, 신탁재산 등으로부터 받은 배당금 <단서 신설> - 법인세 비과세·면세·감면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금 - <신 설> - <신 설>	☐ 익금불산입 제외대상 추가 ○ (현행과 같음) ○ 공제한도 - (현행과 같음) - 지급배당 소득공제를 받은 유동화 전문회사, 신탁재산 등으로부터 받은 배당금. <u>다만,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적립한 이익준비금을 재원으로 받는 배당금은 제외 (진선미의원안)</u> - (현행과 같음) - <u>3% 재평가적립금*</u>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 (정부안) * 합병·분할 차익 중 승계된 금액 포함 - <u>유상감자로 인한 감자차익 등 피출자법인의 소득에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한 수입배당금액(정부안)</u> ○ 시행일: 공포 후 3개월 (진선미의원안) 2024. 1. 1. (정부안) ○ 적용례: 이 법 시행 이후 피출자법인으로부터 수입배당금액을 받는 경우 부터 적용 (진선미의원안)

* 진선미의원안 2023. 9. 27. 발의(의안번호 24835), 정부안 2023. 9. 1. 제출(의안번호 24153)

□ 2건의 개정안은 법인단계에서 과세한 소득에 대해 주주단계 소득에서 제외하여 이중과세를 방지하려는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제도의 적용대상을 조정하려는 것임.

○ 진선미의원안은 내국법인의 수입배당금액 중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가 적립하는 「상법」상 이익준비금에 대응하는 금액에 대하여 익금불산입 대상으로 포함시키고 있음.

○ 정부안은 법인단계에서 과세되지 않아 이중과세의 위험이 없는 ‘감자차익’과 ‘3% 재평가적립금 감액배당’에 대해서는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 현행법에서는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조정¹⁾을 위하여 법인단계 조정제도와 주주단계조정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데, 법인단계에서 법인세를 과세하되 주주단계에서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주주단계조정제도의 하나로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1) 법인이 얻은 소득에 법인세를 과세하고 그 세후소득을 배당하면 다시 주주에게 과세하는 것이 이중과세인지에 대하여 독립과세론과 통합과세론의 견해가 대립되고 있으나, 현행법은 통합과세론에 따라 배당소득에 대하여 이중과세가 되는 것으로 보아 이를 조정하고 있음.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조정제도]

구 분	제 도	내 용
법인단계 조정제도	동업기업 과세특례 (제15조제2항제3호)	동업기업이 동업기업 과세특례 신청을 하면 동업기업에는 과세하지 않고, 동업기업의 소득을 손익분배비율로 동업자에게 배분하여 동업자에게만 과세하는 제도
	배당소득공제 (제51조의2)	투자회사 등의 명목상 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하면 그 금액을 소득공제하는 제도
주주단계 조정제도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제18조의2)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중 일정액을 익금에서 제외시키는 제도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는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로 이중과세 조정)
	배당세액공제 (「소득세법」 제56조)	개인이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에 법인단계에서 부담한 법인세를 더하여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산출세액에서 배당소득에 더한 법인세를 공제하는 제도

-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제도는 법인 단계에서 과세된 후 배당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주주단계에서 재차 과세되지 않도록 조정하기 위한 제도로써, 최근 기업형태 구분 없이 지분율에 따라 익금불산입률을 적용하도록 개정된 바 있음.²⁾
- 기존에는 일반규정인 내국법인에 대한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제도와 특례규정인 지주회사의 익금불산입제도로 나누어 지분비율에 따라 익금불산입률을 차등적으로 적용하고 있었으나 2022년 세법개정을 통해 제도를 단순화하고 조세형평에 부합하도록 기업형태에 따른 구분을 삭제하였음.

2) 2023년 12월 31일까지 배당받는 분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선택할 수 있음.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제도]

피출자법인에 대한 출자비율	익금불산입률
50% 이상	100%
20% 이상 50% 미만	80%
20% 미만	30%

가. 유동화전문회사의 이익준비금을 통한 수입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 (진선미의원안)

- 현행법에서는 유동화전문회사, 부동산투자회사(Real Estate Investment Trusts, 이하 ‘Reits’),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roject Financing Vehicle, 이하 ‘PFV’)³⁾ 등이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배당한 금액을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⁴⁾

3) 금융기관이나 프로젝트 참여 기업들의 자금과 현물로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자산관리업무는 전문자산관리자에게 위탁하는 회사의 형태로, 일반적으로 도로·항만·철도·관광시설 등과 같은 사회간접자본의 건설에 사용되고 있음.

PFV는 금융기관의 대규모 자금 조달을 용이하게 하고 사업 진행을 신속하게 하기 위한 ‘도관 성격’의 법인으로서 「법인세법」 제51조의2에서 규정하였다가 조세특례의 성격을 감안하여 2021년부터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됨(「법인세법」 제51조의2 제9호 삭제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 신설).

4) 「법인세법」

제51조의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이하 이 조에서 “배당가능이익”이라 한다)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이하 이 조에서 “배당금액”이라 한다)은 해당 배당을 결의한 잉여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투자목적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같은 법 제9조제19항제1호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 및 투자유한책임회사
3.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4.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및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5. 「선박투자회사법」에 따른 선박투자회사
6.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특수 목적 법인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7.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른 문화산업전문회사
8.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에 따른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이하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

①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투자회사와 유사한 투자회사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이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이하 이 조에서 “배당가능이익”이라 한다)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이하 이 조에서 “배당금액”이라 한다)은 해당 배당을 결의한 잉여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회사의 자산을 설비투자, 사회간접자본 시설투자, 자원개발, 그 밖에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일 것
2. 본점 외의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직원과 상근하는 임원을 두지 아니할 것
3. 한시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존립기간이 2년 이상일 것 (이하 생략)

- 배당가능이익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상의 법인세비용 차감 후 당기순이익에 이월이익잉여금을 가산하거나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고, 「상법」 제458조에 따라 적립한 이익준비금을 차감한 금액을 말함.⁵⁾
- 만약, 유동화전문회사 등이 배당가능이익의 전액을 소득공제 받기 위해서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를 배당하여야 하는데, 현행 「상법」에서는 주식회사로 하여금 자본금의 2분의1에 달할 때까지 매 결산기의 금전에 의한 이익배당액의 10분의1 이상의 금액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⁶⁾
- 따라서 한시적으로 설립된 특수목적회사라 하더라도 배당을 할 때에는 10%의 이익준비금을 적립하여야 하며, 만약 이익준비금을 적립하지 않고 배당가능이익의 100%를 배당할 경우 이는 위법배당에 해당하여 배당의 지급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것이 원칙임.

□ 그런데, 유동화전문회사, Reits 등은 관련 법령에 따라 「상법」 제458조에 따른 이익준비금을 적립하지 않아도 되는 반면, 별도의 개별법령의 근거가 없는 PFV는 「상법」상 주식회사로서 이익준비금을 적립해야 하므로 투자자의 불이익을 초래하고 이중과세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⁷⁾

5) 「상법」

제462조(이익의 배당) ① 회사는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으로부터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하여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

1. 자본금의 액
2.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
(이하 생략)

6) 「상법」

제458조(이익준비금) 회사는 그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매 결산기 이익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유동화전문회사, Reits 등은 이익준비금 적립의무가 없어 배당 시 배당가능이익의 100%를 배당할 수 있으나 이와 유사한 도관 형태를 지니고 있는 PFV는 10% 이익준비금 적립의무로 인해 90%가 배당을 할 수 있는 최대치가 되며, 결국 10%의 이익준비금 적립금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고 법인세가 과세됨.

[유동화전문회사 등과의 이익준비금 적립여부 비교]

구분		이익준비금 적립	근거법령
「법인세법」 제51조의2	유동화 전문회사	필요 없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0조
	투자회사, 투자유한회사 등	필요 없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2조
	기업구조조정 Reits 등	필요 없음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8조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필요 없음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13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2조
「조특법」 제104조의31	PFV	필요	-

- 이익준비금은 배당할 수 있는 금원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배당단계에서 이중과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지만, 법인 해산시 이익준비금을 포함한 청산배당수입금액에 대해서는 의제배당으로 과세하게 되므로⁸⁾ 결국 법인의 익금으로 과세가 된 이익준비금에 대해 다시 한번 과세하는 결과가 될 수 있음.

7) 한국부동산개발협회 의견임.

8) 「법인세법」

제16조(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① 다음 각 호의 금액은 다른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 등"이라 한다)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다른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본다.

4. 해산한 법인의 주주등(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구성원을 포함한다)인 내국법인이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서 취득하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그 주식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 개정안은 PFV 등이 적립한 이익준비금을 재원으로 받는 배당금에 대해서는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제도를 적용시키려는 것으로서 PFV 청산시 발생할 수 있는 이중과세를 해결하고 투자자들의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음.⁹⁾

○ PFV는 명목회사(paper company)일 뿐만 아니라 각종 투자활동을 통해 얻은 소득을 주주에게 배당절차를 통해 배분하는 성격이 강한 도관 개념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므로 「법인세법」상 유동화 전문회사 등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법인단계에서 이중과세를 해소할 필요성이 존재함.

□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지급배당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회사는 소득발생시점에서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익준비금 배당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을 인정할 경우 오히려 과세상 우대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 이익준비금을 적립하지 않는 투자회사는 소득발생시기에 주주에게 과세하게 되는데, 적립된 이익준비금을 재원으로 하는 배당에 이중과세 조정을 인정할 경우 회사에 유보된 소득에 대한 과세이연 효과를 부여하게 되며, 이익준비금을 배당하지 않고 유보하는 경우 과세불형평은 더 커질 수 있음.

둘째, PFV는 도관 성격의 법인으로 유동화 전문회사 등과 함께 「법인세법」 제51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었으나 2020년 세법개정

9) 법인이 존속 중에는 이익준비금으로 배당을 할 수 없으므로 사실상 청산단계에서 의제배당되는 경우에 한정되어 적용됨.

을 통해 PFV 규정의 조세특례적 성격을 고려하여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하면서 일몰기한을 적용시켰다는 점에서 이중과세가 일부 발생하더라도 이는 정책적 판단의 문제로 볼 수 있음.

- PFV는 유동화전문회사 등과 달리 개별법령을 통해 설립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이로 인해 PFV에 대한 관리·감독 주체가 불분명한 측면이 존재하는 상황이므로 PFV를 유동화전문회사 등과 동일하게 규율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근거법률과 관리체계를 선제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음.
- PFV의 경우 개발사업이 대형화하면서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만들어진 특수목적법인으로 이미 소득공제 등의 세제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어 주주에 대해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까지 적용하는 것은 과도한 혜택이 될 수 있음.

나. 3% 재평가적립금에 대한 감액배당 등에 대한 익금불산입 제외

□ 개정안은 의제배당으로 과세가 이루어지는 ‘3% 재평가적립금에 대한 감액배당’, ‘피출자법인의 소득에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한 수입배당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배당금액’을 익금불산입의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으로서 이중과세 조정제도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법체계 정합성을 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조치로 보임.

-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는 법인단계에서 과세된 소득은 내국법인인 주주단계에서 익금불산입함으로써 법인·주주 2단계에 걸쳐 이중과세되는 것을 조정하려는 것으로서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할 필요가 없음.
- 재평가적립금은 「자산재평가법」에 따라 배당 등을 통해 처분할 수는 없지만,¹⁰⁾ 실제 재평가적립금을 감액하여 배당할 경우 의제배당으로서 주주 또는 출자자에게 과세하게 되는데,¹¹⁾ 3% 재평가적립금은 익금에 산입되지 않아 비과세되는 금액이므로¹²⁾ 이를

10) 「자산재평가법」

제28조(재평가적립금) ① 법인이 재평가를 한 경우에는 그 재평가차액에서 재평가일 1일전의 대차대조표상의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잔액을 재평가적립금으로서 적립하여야 한다.

② 재평가적립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 단수가 생긴 때에는 그 금액은 이를 재평가일 이후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재평가세의 납부
2. 자본에의 전입
3. 재평가일 이후 발생한 대차대조표상의 이월결손금의 보전
4. 환율조정계정상의 금액과의 상계

③ 제2항 단서의 경우에 익금으로 산입된 금액은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익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11) 「법인세법」

제16조(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① 다음 각 호의 금액은 다른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다른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본다.

2.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이나 출자에 전입(轉入)함으로써 주주등인 내국법인이 취득하는 주식등의 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상법」 제459조제1항에 따른 자본준비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적립금(같은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감액하여 배당받은 주주 또는 출자자에 대해 과세하더라도 이 중과세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으므로 3% 재평가적립금 감액 배당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외대상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적격합병 또는 적격분할 시 합병차익 또는 분할차익을 감액배당하는 경우 해당 합병차익 또는 분할차익은 「상법」상 자본준비금으로서 익금불산입 대상이 되나,¹³⁾ 합병차익 또는 분할차익에 포함된 피합병법인 또는 분할법인의 3% 재평가적립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원래의 성격이 의제배당을 구성하는 자본준비금으로서 감액배당 시 익금산입 대상에 해당하므로 이 경우에 대해서도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대상에서 제외시킬 필요가 있음.

12) 「자산재평가법」

제33조(재평가차액등에 관한 소득계산의 특례) ① 재평가차액은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계산상 익금 또는 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재평가차액은 법인세법에 의한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되, 동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② 법인이 1983년 12월 31일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1984년 1월 1일 이후 재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토지를 최초로 재평가한 후 당해토지를 양도함에 따라 발생한 양도차손은 당해토지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적립금을 증감한 경우 그 증감액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3) 「상법」

제459조(자본준비금) ① 회사는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 합병이나 제530조의2에 따른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경우 소멸 또는 분할되는 회사의 이익준비금이나 그 밖의 법정준비금은 합병·분할·분할합병 후 존속되거나 새로 설립되는 회사가 승계할 수 있다.

- ‘피출자법인의 소득에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한 수입배당금액’ 또한 법인단계에서 과세된 소득이 아니므로 주주단계에서 익금불산입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주식소각 및 자본감소 등의 감자나 합병과 법인해산 및 법인분할 등으로 주주·사원 및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의 액과 기타 재산가액의 합계금액이 당해 주식이나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한다면 그 초과금액 만큼 의제배당으로 주주 또는 출자자의 당해 연도 익금으로 산입하게 되므로¹⁴⁾ 이 경우 법인단계에서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조항을 적용할 필요가 없어짐.
- 예를 들어 유상감자로 인한 감자차익¹⁵⁾의 경우 자본감소로 인해 당해 법인에게는 과세가 되지 않지만,¹⁶⁾ 감자차익을 재원으로 배당할 경우 주주 또는 출자자에 따라 당해 주식이나 출자를 취득

14) 「법인세법」

제16조(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① 다음 각 호의 금액은 다른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 등”이라 한다)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다른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본다.

1.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사원의 퇴사·탈퇴 또는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등인 내국법인이 취득하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제13조(세율) ① 재평가세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1. 제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1983년 12월 31일이전에 취득한 土地로서 1984년 1월 1일 이후 再評價를 실시하지 아니한 土地를 최초로 再評價하는 경우 당해土地를 제외한다)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과세표준에 대하여는 100분의 1
2. 제1호외의 자산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과세표준에 대하여는 100분의 3
-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과세표준의 구분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5) 감자차익이란 자본감소의 경우로서 그 감소액이 주식의 소각, 주금의 반환에 든 금액과 결손의 보전에 충당한 금액을 초과한 경우의 그 초과금액을 말함.

16) 「법인세법」

제17조(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4. 감자차익(減資差益): 자본감소의 경우로서 그 감소액이 주식의 소각, 주금(株金)의 반환에 든 금액과 결손의 보전(補填)에 충당한 금액을 초과한 경우의 그 초과금액

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의제배당의 대상이 되는데, 이중과세로 볼 수 없으므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바람직함.

문 의 처
02)6788-5157